

[2022년 테마기출문제 공시법령 정오표] (2022.4.22.현재)

	오(誤)	정(正)
p.194 지역권등기 3.	①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.	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(민법 제294조), 점유취득시효이므로 등기를 요한다(민법 제245조 제1항).
p.196 저당권등기Ⅲ 3.	④ “근”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는 기록할 수 있지만, 이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.	④ “근”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, 이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.